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8 선고 2021가단1514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4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4. 20. 접수 제83098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이순형

별지